

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등 공시송달 공고

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10. 12.

안 산 고 용 노 동 지 청



- 1. 건 명: 근로기준법 제13조(보고, 출석의 의무) 위반에 대한 과태료 자진납부 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
- 2. 근 거: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,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3조
- 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사업장명	법인등록번호	주소	대표	공시송달내용
주식회사 와우에프엔씨	161111-0*****	충남 홍성군 금북로 22	신증원	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

- 4. 공고기간: 2026. 10. 12. ~ 2026. 10. 26.(15일간)
- 5. 의견제출안내: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노동기준조사2과(경기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길 26)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(F.0503-8803-0334)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6. 기타사항은 노동기준조사2과 근로감독관 도진환(Tel.031-412-191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